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통운(주) 운전기사가 출근하면서 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후송가료중 “뇌출혈(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88-262호 88. 9. 19.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 1동

성명 : 이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원 처 분 청 :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5. 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안○○(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통운(주) 청량리지점 의정부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로서 1988. 1. 5. 08:3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출근하는 것을 동료직원이 목격하고 즉시 의정부 소재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1988. 1. 8. 11:25경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평소

혈압이 정상이고 출근전인 1988. 1. 1-1. 3.까지는 휴무로서 휴식하였고 또한 1988. 1. 4은 업무량이 없어 출근 휴식한점으로 보아 파로나 정신적 긴장이 전혀 없는등 사망경위 상병명을 종합하여 업무의 재해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1979년 ○○통운(주) 의정부영업소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사망할때까지 건강한 상태였고 1988. 1. 5.회사에 출근한 후 발병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8.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8. 1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6. 7. 오○○)
4.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88. 5. 6.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8. 5. 2. 조사자 8급 임○○)

6. 사망진단서 사본(1988. 1. 8.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장)

7. 문답서 사본(1988. 3. 29. 한○○ 1988. 2. 15. 김○○)

8. 소견서 사본(성모병원, 원처분청 자문의)

9. 건강진단 개인표 사본(1987. 10. 13. 동부중앙의원장)

10.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통운(주) 청량리 지점 의정부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로서 1988. 1. 5. 08:3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출근하는 것을 동료 직원이 목격하고 즉시 의정부 소재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1988. 1. 8. 11:25경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평소 혈압이 정상(130/80)이고 출근전인 1988. 1. 1-1. 3.까지는 휴무이고 동월 1. 4.은 출근하였으나 업무량이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전혀없고 사망경위와 상병명을 종합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통운(주) 청량리지점 의정부 영업소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사망할때까지 건강하였고 1988. 1. 5.에도 회사에 출근한 후 발병하여 치료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는 1988. 1. 1-1. 3.까지 신경연휴를 하였고 동월 1. 4.은 출근하였으나 업무량이 없어 휴식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긴장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1988. 1. 5. 08:3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출근하는

것을 동료 직원인 한○○(운전기사)이 목격하여 회사 숙직실에 옮겨 배를 만져주었으나 회복되지 않아 급히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한 점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 피재자는 1988. 1. 5. 발병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중 1988. 1. 8. 11:25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뇌출혈(추정) 부정맥(추정), 선행사인 : 당뇨, 고혈압”이고 소견서상 “초진상병명을 발병원인 : 당뇨 및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감염증의 원인균은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당뇨병 등 면역성이 떨어진 환자에게 잘 올수 있음”이며 1987. 10. 13.자 실시한 피재자의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상 혈압은 130/80mmHg이다. 또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사망자는 평소 혈압이 130/80mmHg로서 혈압정상인자가 회사 출근중 복통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1)당뇨, 2)고혈압, 3)뇌출혈(추정), 4)불명열, 5)폐혈증, 6)간염추정, 7)부정맥으로 나타났으나 상기 병명은 사망자의 업무(내용 및 과로)와는 관련없는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재해로 사료됨”이다.

이상으로 보아 피재자는 발병이 출근도중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발병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육체적 과도가 없었고 정신적 충격등도 없었을 뿐아니라 평소 혈압이 130/80mmHg로 혈압 정상인자로 상병명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종합판단할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산업(주) 기사가 야간근무중 시내 외출을 다녀오다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88-339호 88. 12. 19. 취소)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 경북 포항시 두호동

성명 : 김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원 처 분 청 :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8. 7. 29. 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7. 29.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곽○○(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주) 생산부 기사로서 1988. 6. 3. 야간근무(20:00-익일 08:00간)중 동일 21:55분경 숙직자(정○○ 과장대리)의 허락을 받고 동료근로자인 서○○(당일 야간 근무자)에게 집에 잠시 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회사 업무용 차량(픽업차량)을 손수 운전하여 자택에 갔다가 회사로 오던중인 동일 22:40경 포항시 양학동 철도 건널목에서(부산발 포항행 여객열차 제912호)여객열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당일은 공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당직

자에게는 회사 용무로 외출한다는 말이 없었고 단지 시내외출을 갔다 오겠다는 말만하고 외출도중 열차와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10. 4.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10. 21.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1988. 8. 30. 심사관 박○○)
4. 사망재해조사 보고(1988. 6. 21. 행정주사 김○○)
5.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1988. 7.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6. 사실증언(1988. 9. 22. 회사 근로자 서○○)
7.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1988. 9. 22. 생산차장 공○○)
8. 각 서(1988. 8. 18. 김○○)
9. 사망재해발생보고(1988. 6. 13. ○○산업 대표이사)
10. 사체검안서(1988. 6. 4. 포항기독병원장)
11. 문 답 서(○○산업근로자 정○○, 정○○, 강○○)
12. 출장복명서(1988. 12. 13. 위원장 박○○, 위원 황○○, 이○○)

13.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산업(주) 생산부 기사로서 1988. 6. 3. 야간근무(20:00-익일 08:00간)중 동일 21:55분경 숙직자(정○○ 과장대리)의 허락을 받고 야간 근무자인 서○○에게 회사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집에 가서 책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회사 픽업차량을 손수 운전하여 집에 갔다가 회사로 오던중 동일 22:40경 포항시 양학동 철도 건널목에서 부산발 포항행 여객 열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당일(6. 3일)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회사의 용무로 시내에 외출하였다고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불충분하므로 사적인 사유로 인한 업무의 재해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분명히 회사가 피재자에게 연구과제(Ferro-Allog)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레포트로 작성 제출하기 위한 “특수강 편람”을 집에서 가져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서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산업(주)에서는 평소 기사급이상 고급인력에게는 항시 연구하고 자기발전과 회사제품의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 및 새로운 제품개발 방안등에 관하여 필요할시는 연구과제를 부여하는데 피재자 고 광○○에게는 1988. 5. 16. 09:30 생산부 회의석상에서 생산부차장 공○○로부터 주생산품인 “Ferro-Allog”에 관한 논문을 번역하여 동년 6. 10까지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 1988. 6. 3. 피재자는 야간근무(20:00-익일 08:00간)를 하던중인 21:55분경 동일 당직책임자 정○○의 허락(그때 피재자가 숙직 책임자 정○○에게 회사 픽업차량으로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허락을 요구한 사실)받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손수 운전, 밖에 외출한 사실을 인정한다. 셋째 : 피재자는 1988. 6. 3. 야간근무의 책임자로서 회사(공장)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전시한 주 생산품인 “Ferro-Allog”에 관한 논문 번역 등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동일 21:55분경 동료직원인 생산부 김○○계장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자(그때 정○○ 반장도 주위에 없었음) 생산부 조작공인 서○○에게 집에 가서 책을 가져와 야간(공장 조업은 정상상태였음)에 보고서(레포트)를 작성해야겠다는 것과 또한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후 바로 회사 업무용 차량인 픽업차를 손수 운전하여 집에서 “특수강편람”을 가지고 회사쪽으로 오다가 동일 22:40경 부산발 포항행 여객열차(양학동 철도건널목)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등 모두 인정한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피재자 광○○은 회사에서 지시한 연구과제를(1988. 6. 10. 한 제출)작성하기 위하여 동료들에게 통고내지 외출허락을 받고 회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 가서 “특수강 편람”을 지참 귀사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업무 기인성 및 수행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적용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